##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09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김소희

이준석 · 최형두 · 고동진

김형동 · 강대식 · 이달희

엄태영 • 권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 (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

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 나. 보험설계사 가중제재처분 요건의 기산점을 5년으로 함(안 제86조 제1항·제2항).
- 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 ·문책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 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 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제1항).
-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 209조제1항).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 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 는 경우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이 법에"를 각각 "최근 5년간 이 법에"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대리 점""으로 한다.

제196조제1항제9호 중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제20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 중 "과소·과다하게"를 "과소하게"로 한다. 8의2. 제1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 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
의 제한) ①・② (생 략)	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
	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
	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4. <u>최근 5년간 이 법에</u>
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u>이 법에</u> 따라 과태료 처분을2회 이상 받은 경우
- 6. 7.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u>보</u> <u>험대리점</u> 및 보험중개사에 관 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국내사무소"·<u>"보험</u> <u>대리점"</u>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 ②・③ (생 략)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 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 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 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최근 5년간 이 법에</u>
6.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준용) ① <u>보</u>
험설계사·보험대리점
,
<u>"보험설계사"·"보험대</u>
리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6조(과징금) ①

- 1. ~ 8. (생략)
-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u>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u> 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단 <u>서 신설></u>
- 10.・11.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과대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u><신 설></u>

- 9. 10. (생략)
-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 나 <u>과소·과다하게</u> 계상하는

1. ~ 8. (현행과 같음)
9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하.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
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9조(과태료) ①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15조제5항에서 준용하
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회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회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 10. (현행과 같음)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 10. (현행과 같음)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_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